

1. 개정이유

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수행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수행체계 구체화(안 제36조, 제36조의3)
 -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납부자와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행체계를 규정하고, 이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다)는”을 “한다) 또는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”으로, “해당한다)”를 “해당한다) 또는 납부자 동의서(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”로 한다.

제36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법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 신청 및 시행

별지 제12호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행 동의서(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
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4호서식 제6호 중 “(납부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”를 “(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후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”로 한다.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행동의서

생태계보전 부담금 납부사업	사업명	
	사업지 주소	
	총사업비	사업기간
	납부금액	납부일시
	반환동의금액	

생태계보전 부담금 납부자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주소(사업장소재지)	전화번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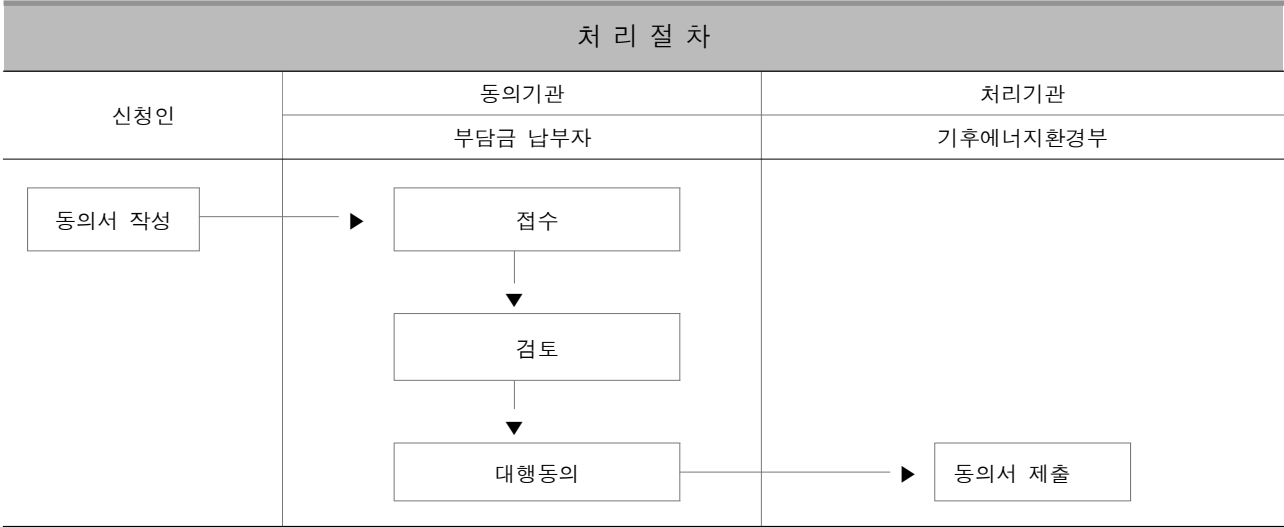
자연환경 보전사업 대행자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주소(사업장소재지)	전화번호

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고,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반환받는데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6조(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)	제36조(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)
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(이하 “납부자”라 한다)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대표 납부자 지정동의서(여러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~ 7. (생략) ② 삭제 ③ ~ ⑤ (생략) 제36조의3(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)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	①-----한다) 또는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-- ----- ----- ----- - 해당한다) 또는 납부자 동의서(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36조의3(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 2. (생 략) ② (생 략)	<u>1의2. 법 제50조에 따른 생태계</u> <u>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 신</u> <u>청 및 시행</u>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